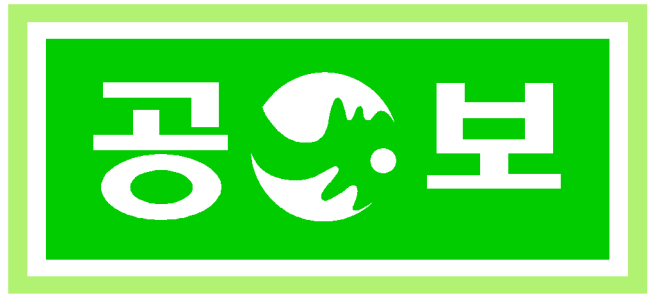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람	기 관 의 장

제 1058 호 2017. 3. 23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54호[강동동 통·반장 조정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55호[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(변경)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57호[도로명주소 고시]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58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12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388호[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공고] 13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406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]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407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408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21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54호

강동동 통·반 조정 고시

「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·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시행일자 : 2017. 3. 23.

통·반 조정내역

구 분	통			반			비고
	현 행	조 정	증 감	현 행	조 정	증 감	
계	228	230	증 2	2,086	2,110	증 20	
농소1동	28	28	-	323	323	-	
농소2동	39	39	-	438	438	-	
농소3동	39	39	-	427	427	-	
강동동	28	30	증 2	167	191	증 24	
효문동	30	30	-	251	251	-	
송정동	22	22	-	216	216	-	
양정동	20	20	-	123	123	-	
염포동	22	22	-	141	141	-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- 55호

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(변경) 고시

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-212(2004. 12. 23)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, 제2006-75(2006. 3. 30)호로 도시개발구역(변경)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, 제2006-286(2006. 11. 30)호, 제2010-57(2010. 3. 11)호, 제2010-298(2010. 12. 13)호, 제2012-120(2012. 5. 31)호, 제2012-194(2012. 8. 27)호, 제2013-191(2013. 8. 22)호, 제2013-223(2013. 10. 17)호, 제2014-28(2014. 2. 27)호, 제2014-177(2014. 8. 28)호, 제2015-62(2015. 3. 26)호, 제2015-183(2015. 8.20)호로 개발계획(변경)수립 고시 되고,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07-1(2007. 1. 4)호로 실시계획인가, 제2010-102(2010. 12. 30)호, 제2012-131(2012. 9. 20)호, 제2013-141(2013. 8. 29)호, 제2014-115(2014. 7. 10)호, 제2014-165(2014. 10. 2)호, 제2015-189(2015. 9. 24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, 제2008-46(2008. 1 31)호, 제2015-63(2015. 4. 23)호, 제2015-222(2015. 10. 29)호, 제2016-50(2016. 3. 24)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, 울산광역시 제2014-2-2(2014.9.29.)호로 사업(변경)승인 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74B 2L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되었기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(변경)고시 합니다.

2017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I. 도시관리계획(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) 지형도면고시 조서

1. 도시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조서(변경없음)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-3번지 일원	996,500	-	996,500	

2.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 고시조서

가.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(변경없음)
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	
합계	996,500.0	100.0		
소계	807,000.0	81.0		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316,510.0	31.8	
	제3종일반주거지역	203,960.0	20.5	
	준주거지역	286,530.0	28.7	
상업 지역	소계	189,500.0	19.0	
	일반상업지역	189,500.0	19.0	
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조서

가. 교통시설

▣ 도로(변경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검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위 (m)								
기정	대로	2	29	30	보조간선 도로	890	대로1-12	중로1-90	일반 도로		00.03.04 (울고 333호)	구역외 기면 사상
기정	대로	2	46	30	주간선 도로	1,641	대로2-29	중로1-90	"		07.01.04 (울산광역시 2007-1호)	
기정	중로	1	205	20 ~23	집산 도로	479	중로1-90	932-4세	"		"	일부구간 폭원 23m
변경	중로	1	205	20 ~23	집산 도로	479	중로1-90	932-4세	"		"	일부구간 폭원 23m
기정	중로	1	206	23	보조간선 도로	1,193	중로1-210	중로1-90	"		"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207	20	보조간선 도로	719	중로1-90	소로1-5	일반 도로		17.01.04 (출산장구교 2007-1호)	
기정	중로	1	208	20	집산 도로	270	중로1-90	대로2-46	"		"	
기정	중로	1	209	20	"	279	중로1-90	대로2-46	"		"	
기정	중로	1	210	20 ~25	"	444	중로1-90	93호 근린공원	"		"	일부구간 폭원 25m
기정	중로	1	211	20 ~23	보조간 선도로	194	대로2-29	중로1-210	"		"	일부구간 폭원 23m
기정	중로	1	212	20 ~23	"	247	중로1-207	중로1-205	"		"	일부구간 폭원 23m
변경	중로	1	212	20 ~26	"	247	중로1-207	중로1-205	"		"	일부구간 폭원 26m
기정	중로	2	315	15	"	1,260	중로1-210	중로1-207	"		"	일부구간 폭원 15.5m
기정	중로	2	316	15	집산 도로	243	중로1-90	대로2-46	"		"	
기정	중로	2	317	15	"	86	대로2-46	중로2-315	"		"	
기정	중로	2	318	15	"	74	대로2-46	중로2-315	"		"	
기정	중로	2	319	15	집산 도로	220	중로1-211	중1-210	"		"	
기정	중로	2	320	15	"	422	중로1-210	대로2-46	"		"	
기정	중로	2	321	15	"	508	중로1-208	중로1-206	"		"	
기정	중로	2	322	15	"	42	소로2-40	중로2-315	"		"	
기정	중로	2	323	15	"	31	소로1-14	중로2-315	"		"	
기정	중로	2	324	17	"	214	중로1-208	중로2-316	"		"	보행 우선 도로
기정	중로	2	325	17	보행자 전용도로	40	92호 근린공원	중로1-208	특수 도로		"	
기정	중로	2	326	17	"	52	중로1-209	92호 근린공원	"		"	
기정	중로	2	327	17	집산 도로	429	중로1-210	중로1-209	일반 도로		"	보행 우선 도로
기정	소로	1	4	10	국지 도로	114	대로2-46	중로1-205	"		"	
기정	소로	1	5	10	"	677	중로2-315	중로1-207	"		"	
기정	소로	1	6	10	"	198	중로2-315	소로1-5	"		"	
기정	소로	1	7	10	"	139	중로2-315	소로1-5	"		"	
기정	소로	1	8	10	"	970	중로2-315	소로1-8	"		"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검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9	10	국지 도로	75	중로2-315	소로2-44	일반 도로		07.01.04 (예산확구) 207-1호	
기정	소로	1	10	10	"	210	중로2-324	중로2-324	"		"	
기정	소로	1	11	10	"	206	중로2-327	중로2-327	"		"	
기정	소로	1	12	10	"	199	중로2-327	중로2-327	"		"	
기정	소로	1	13	10	"	190	중로2-319	중로2-319	"		"	
기정	소로	1	14	10	"	438	산하동 421-3입	중로2-315	"		"	
기정	소로	1	15	10	"	38	소로1-14	중로2-315	"		"	
기정	소로	1	16	10	"	467	소로2-36	중로1-207	"		"	
기정	소로	1	17	11	김산 도로	200	중로 1-205	산하동 940-8천	"		"	구역외 기판 시점
기정	소로	2	2	8	보행자 선용도로	25	93호 근린공원	소로1-8	특수 도로		"	
기정	소로	2	3	8	"	383	중로1-90	중로2-315	"		"	
기정	소로	2	4	8	"	365	중로1-90	중로2-315	"		"	
기정	소로	2	5	8	"	278	중로1-206	소로1-8	"		"	
기정	소로	2	6	8	"	51	중로1-90	중로2-320	"		"	
기정	소로	2	7	8	"	287	중로2-320	소로1-14	"		"	
기정	소로	2	8	8	"	149	중로1-211	대로2-46	"		"	
기정	소로	2	9	8	"	40	대로2-29	중로2-319	"		"	
기정	소로	2	10	8	"	30	대로2-46	중로2-40	"		"	
기정	소로	2	11	8	"	32	대로2-46	소로1-14	"		"	
기정	소로	2	36	8	국지 도로	415	소로1-16	중로1-207	일반 도로		"	
기정	소로	2	37	8	"	280	소로1-16	중로1-207	"		"	

구분	구 모			폭원 (m)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								
기정	소로	2	38	8	국지 도로	112	소로2-37	소로1-16	일반 도로		07.01.04 (출산별구교 2007-1호)	
기정	소로	2	39	8	"	90	소로2-37	소로1-16	"		"	
기정	소로	2	40	8	"	568	중로2-317	중로2-315	"		"	
기정	소로	2	42	8	"	154	소로1-8	소로1-8	"		"	
기정	소로	2	43	8	"	247	소로2-44	소로2-42	"		"	
기정	소로	2	44	8	"	253	소로1-8	소로1-8	"		"	
기정	소로	2	45	8	"	37	소로2-43	소로1-8	"		"	
기정	소로	3	1	5.5	집산 도로	355	소로 1-17	대로 1-12	"		"	구역외 기반 시설
기정	소로	3	2	5.5	"	400	대로 1-12	소로 1-17	"		"	"
기정	중로	1	90	20 ~21	보조간 선도로	4,490	대로3-43	대로1-12	"	강릉해 안도로		일부구간 폭원2m

□ 주차장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16,466	-	16,466		
기정	77	주차장	산하동 53-3전 일원	2,650	-	2,650	07.01.04 (출산별구교 2107-1호)	
기정	78	주차장	산하동 269답 일원	2,857	-	2,857	"	
기정	79	주차장	산하동 348답 일원	2,190	-	2,190	"	
기정	80	주차장	산하동 산108입 일원	1,121	-	1,121	"	
기정	81	주차장	산하동 360답 일원	2,524	-	2,524	"	
기정	82	주차장	산하동 405전 일원	2,911	-	2,911	"	
기정	83	주차장	산하동 산38-6입 일원	919	-	919	"	
기정	84	주차장	산하동 산108입 일원	1,294	-	1,294	"	

나. 도시공간시설

▣ 공원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81,510	-	81,510		
기정	91	공원	근린공원	산하동 116답 일원	10,372	-	10,372	07.01.04 (울산광역시 2007-1.30)	
기정	92	공원	근린공원	산하동 302답 일원	44,985	-	44,985	"	
기정	93	공원	근린공원	산하동 677대 일원	18,149	-	18,149	"	
기정	315	공원	어린이공원	산하동 398-1전 일원	3,821	-	3,821	"	
기정	316	공원	어린이공원	산하동 산55-6인 일원	2,264	-	2,264	"	
기정	317	공원	어린이공원	산하동 산106-5인 일원	1,919	-	1,919	"	

▣ 녹지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116,165	-	116,165		
기정	280	녹지	완충녹지	산하동 457답 일원	6,389	-	6,389	07.01.04 (울산광역시 2007-1.30)	
기정	281	녹지	완충녹지	산하동 502묘 일원	2,210	-	2,210	"	
기정	282	녹지	완충녹지	산하동 145위 일원	107,566	-	107,566	"	구역의 기법시설

다. 공공문화시설

▣ 학교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43,599	-	43,599		
기정	233	학교	고등학교	산하동 752답 일원	14,730	-	14,730	07.01.04 (울산광역시 2007-1.30)	
기정	234	학교	중학교	산하동 산38-6인 일원	14,456	-	14,456	"	
기정	235	학교	초등학교	산하동 산62-3인 일원	14,413	-	14,413	"	

▣ 공공청사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2,883	-	2,883		
기정	53	공공청사	등사무소	산하동 753답 일원	1,509	-	1,509	07.01.04 (울산광역시 2007-1호)	
기정	54	공공청사	소방파출소	산하동 299-2답 일원	1,374	-	1,374	"	

▣ 문화시설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1,273	-	1,273		
기정	4	문화시설	문화시설	산하동 산98-4답 일원	1,273	-	1,273	07.01.04 (울산광역시 2007-1호)	

4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고시조서(변경없음)

구 역 명	위 치	면적(m ²)		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강동산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-3번지 일원	996,500	-	996,500	

※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5. 도시관리계획(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) 지형도면 고시 도면 : 계획생략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5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4길 14(염포동) 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3. 2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525-7	울산광역시 북구 중리4길 14(영포동)	2017-03-23	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현재도 사용중인 마을이름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8 7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길 26(진장동)	2017-03-23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72-1	울산광역시 북구 지당1길 29(송정동)	2017-03-23	이 지역의 옛 지명이므로 지역성을 띤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4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82B 3L	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51(산하동)	2017-03-23	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4-05-07	
5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179-2	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벨리로 860-19(매곡동)	2017-03-23	현재 오토벨리로라고 불리어지고 있어 부여하였다	2013-12-30	
6	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791-3	울산광역시 북구 가대서길 56-20(가대동)	2017-03-23	가대동 서쪽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7	울산광역시 북구 신진동 108-4	울산광역시 북구 신진로 55-9(신진동)	2017-03-23	기존 사인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4-08	
8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물류2단지 6B 7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35(진장동)	2017-03-23	진장 유통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1-23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-5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울산광역시 복구 중리10길 15	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동 525-7	2017. 3. 23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시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.go.kr)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3. 23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7-388호

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직인

대 상 시 설			지 정 사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	비 고
시설(지역)명	소 재 지	소 유 자 (점유자관리자)				
주택건설사업장 (반도유보라)	울산 복구 송정동 송정택지지구 B6블록	㈜반도건설	중대재해발생 (사망1명)	D	안전점검·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월1회 이상 정기점검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7-406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
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가 2016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2016년도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예고 실시현황
2.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

(단위 : 건)

① 총 건수	② 예고 대상					③ 예고 매체 (중복 표기)			④ 예고 기간	
	고시	훈령	예규	기타	관보· 공보	인터넷	신문 방송	기타	20일 이상	20일 미만
870	225	52	1	639	293	864	9	687	859	11

2017. 3 . 23 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비고: 이 공고서식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407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
- 나.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 증원 : 4명(562명 → 566명)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조정 **【별표 3】**
 - 총 계 : 562명 → 566명(증 4명)
 - 일반직 계 : 560명 → 564명(증 4명)
 - 5급 : 증 1명(32명 → 33명), 6급 이하 : 증 3명(523명 → 526명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.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홍보실

- 전화번호 : 052)241-7103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62명이며”를 “566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1호 중 “549명”을 “553명”으로 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 급 별	기 관 별 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동
총 계	566		-		
정 무 직 계	1		-		
구청장	1	1	-	-	-
일 반 직 계	564		-		
3급	1	1	-	-	-
4급	4	3	-	1	-
5급	33	19	2	3	8
6급 이하 계	526		-		
별 정 직 계	1		-		
6급 상당 이하 계	1		-		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<u>562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49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566명</u>이며,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: <u>553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 청 의 회 사무과</th> <th>직 기 속 관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562</u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560</u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32</u></td> <td><u>19</u></td> <td>2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6급이하 계</td> <td><u>523</u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 이하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총 계	본 청 의 회 사무과	직 기 속 관	동	총 계	<u>562</u>	-			정무직 계	1	-			구청장	1	1			일반직 계	<u>560</u>	-			3급	1	1			4급	4	3	1		5급	<u>32</u>	<u>19</u>	2	3	6급이하 계	<u>523</u>	-			별정직 계	1	-			6급상당 이하계	1	-			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 청 의 회 사무과</th> <th>직 기 속 관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566</u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564</u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33</u></td> <td><u>20</u></td> <td>2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6급이하 계</td> <td><u>526</u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 이하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총 계	본 청 의 회 사무과	직 기 속 관	동	총 계	<u>566</u>	-			정무직 계	1	-			구청장	1	1			일반직 계	<u>564</u>	-			3급	1	1			4급	4	3	1		5급	<u>33</u>	<u>20</u>	2	3	6급이하 계	<u>526</u>	-			별정직 계	1	-			6급상당 이하계	1	-		
	총 계	본 청 의 회 사무과	직 기 속 관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562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560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32</u>	<u>19</u>	2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이하 계	<u>523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계	본 청 의 회 사무과	직 기 속 관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566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564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33</u>	<u>20</u>	2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이하 계	<u>526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7-408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강동권 개발 등 관광·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
- 나.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과 신설 : 관광해양과
- 나. 명칭변경 : 도시행정과 → 도시과
- 다. 담당신설 : 관광개발, 지역공동체, 출산장려, 재난관리
- 라. 담당통합 : 평생교육+창의놀이터 → 평생교육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홍보실

- 전화번호 : 052)241-7103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총무과, 자치행정과, 문화체육과, 도서관과, 세무과, 민원지 적과”를 “총무과, 자치행정과, 문화체육과, **관광해양과**, 도서관과, 세무과, 민원지 적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자치행정, 주민자치, 교육지 원, 평생교육, 동행정업무 총괄, 창의놀이터 운영”을 “자치행정, 주민자치, 교육지원, **지역공동체**, 평생교육, 동행정업무 총괄, 창의놀이터 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관광정책, 관광개발,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노인복지, 여성아동청소년, 보육, 장애인복지”를 “노인 복지, 여성아동청소년, 보육, 장애인복지, **출산장려**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도시행정과”를 “도시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① (생략)</p> <p>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, 자치행정과, 문화체육과, <u>도서관과</u>, 세무과, 민원지적과를 둔다.</p> <p>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자치행정, 주민자치, 교육지원, <u>평생교육</u>, 동행정업무 총괄,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5. ~ 7. (생략)</p>	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----- <u>관광해양과</u>, 도서관과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지역공동체</u>, <u>평생교육</u>----- 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관광정책, 관광개발, 해양개발</u> 등에 관한 사무</p> <p>6. ~ 8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① · ① (생략)</p> <p>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노인복지, 여성아동청소년, 보육, <u>장애인복지</u> 등에 관한 사무</p> <p>3. ~ 10. (생략)</p>	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① ·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장애인복지</u>, <u>출산장려</u> ----</p> <p>3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① (생략)</p> <p>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, 안전정보과, 도시행정과, 공원녹지과, 교통행정과, 건축주택과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----- <u>도시과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